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0-19

청 주 지 방 법 원

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구합597 증여세 환급
원 고	A
피 고	[redacted]군
변 론 종 결	2015. 8. 27.
판 결 선 고	2015. 9. 1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72,120원을 환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7. 11. 20.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766 소유권보존등기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0-19

소 등 사건의 2007. 11. 7.자 조정결정에 따른 [redacted]군 B 임야 177,570㎡ 외 2 필지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의 532/25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 972,120원을 신고하고 2007. 12. 4. 위 972,120원을 납부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4. 7. 24. 피고에게,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·납부한 972,120원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환급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는 2014. 7. 30. 원고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6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신고·납부가 있었던 2007. 12. 4.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,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원고가 이미 신고·납부한 취득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, 이 사건 소에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.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다.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로 972,120원을 과잉징수하였다[1]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2,12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.

1)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신고·납부한 취득세 등의 세율이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0-19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·납부행위가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세 등에 관한 신고를 2007. 11. 20.에, 그 납부를 2007. 12. 4.에 각 하였고, 그로부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[2]이 경과한 이후인 2014. 7. 24. 피고에게 위 지방세환급을 청구하고, 2015. 6. 15. 위 지방세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, 원고의 지방세환급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. 따라서 이미 시효소멸한 지방세환급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방승만

판사 인형준

판사 정혜원

2)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(법률 제8541호, 2007. 7. 23.) 및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참조.